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
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현행 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
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향후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, 실태조사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